

# KCGS Report

제13권 6호 | 통권 제162호  
2023.6.



한국ESG기준원

---

## KCGS Report 제13권 6호

발행일 : 2023년 6월 30일

발행인 : 심인숙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3권 6호 | 2023. 6.

## ● ESG 동향

- |  |    |
|--|----|
| - 국내 주주제안 현황 분석: 최근 3년간의 주주제안자<br>및 안건별 변화를 중심으로 | 2  |
| - ESG 이슈 리포트 - 건설업(2)                            | 13 |

## Global News

- |  |    |
|--|----|
| 1. EU 의회, 기업 거버넌스에 인권 및 환경 영향 통합 법안 승인 | 28 |
| 2. CDP, 1,600여 개 기업에 환경 데이터 공개 촉구      | 30 |

# 국내 주주제안 현황 분석: 최근 3년간의 주주제안자 및 안건별 변화를 중심으로

박정민\*

- ▶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추이를 살펴보고 주주제안자 및 주주제안 안건별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 분석 결과, 최근 3년 주주제안 대상 기업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주제안자 중 특히 개인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비중이 높아지고, 주주제안 안건 또한 다변화되는 모습이 관찰됨
- ▶ 주주제안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주주가 제기한 주주제안의 경우 최근 3년 가결률은 약 5.7%로 타 집단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소액주주연대가 상정한 주주제안 또한 총수 일가의 내부지분율이 높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남
- ▶ 다만,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3%률을 활용하여 감사/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이 가결된 사례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수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주주제안의 가/부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됨
- ▶ 향후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 측면에서의 개선과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관심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결론적으로 주주제안의 증가가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선진 자본시장을 위한 질적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 개요

-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주권익보호 및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 이행 방식 중 하나인 주주제안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2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공표된 이후, 2018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가입을 시작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코드 가입 및 주주관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전개됨
  - 또한 2020년 개정 상법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의무화되고, '3%룰'<sup>1)</sup>로 인해 주주제안

---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02-6951-3728, jmpark@cgs.or.kr

1) 상법 제542조의 12 제4항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그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적용함. 동법 제542조 12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상장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

-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 안전 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주주제안이 크게 증가하였음
-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현황을 살펴보고, 주주제안자 및 주주제안 안건별 추이 및 특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개요

- 최근 3년간 주주제안이 상정된 121사의 주주제안 안건 505건을 조사함
  - (분석 기간 및 분석 내용)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121사(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5사, 코스닥시장 상장사 66사)에 대해 조사함
  - (분석 표본) 한 개의 분석 표본은 증권시장-년도-기업명-안건번호-안건분류-주주제안자-주주총회 결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주제안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내 주주총회소집공고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위의 서류에서 확인 불가하거나 참고서류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기업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함
    - 추가 조사에도 불구하고 주주제안 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확인불가'로 구분함

## 2021년 - 2023년 주주제안 현황 분석

-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 대상기업 수는 유가 및 코스닥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안건 수의 일관된 추이는 보이지 않지만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37%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임

〈표 1〉 2021년~2023년 주주제안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b>해당 기업 수</b>	<b>34</b>	<b>37</b>	<b>50</b>
유가증권시장 대상	16	17	22
코스닥시장 대상	18	20	28
<b>총 안건 수</b>	<b>168</b>	<b>142</b>	<b>195</b>
유가증권시장 대상	66	47	68
코스닥시장 대상	102	95	127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합산 기준

\*\* 2023년은 보고서 분석 시점인 5월 31일까지 조사함

- 3년간 기업 한 곳당 평균 약 4개의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주주총회의 경우 한 기업에 최대 23개의 주주제안이 상정된 사례가 발견됨
- 분석 기간 중 3년 연속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은 3개사(케이프, 대웅, 사조산업)로 전체의 2.5% 수준이며, 각각 2대 주주로부터의 경영권 분쟁 성격의 주주제안과 소액주주연대의 주식배당 요구,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주주제안이 상정되었으나 모두 부결됨
- 주주제안이 상정된 주주총회 횟수를 살펴보면, 4회 상정된 기업은 1개사(0.8%), 3회 상정된 기업은 4개사(3.3%), 2회 상정된 기업은 16개사(13.2%)로 나타남
  - 반복적으로 상정된 주주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안건이 안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낮은 주가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현금 및 주식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소액주주연대 및 개인주주의 주주제안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2〉 2021~2023년 중 주주제안이 2회 이상 상정된 대상 기업

주주제안 대상 횟수(해당 회사수)	주주제안 대상 기업
4회 (1개사)	디엔에이링크
3회 (4개사)	대웅, 사조산업, 케이프, ES큐브
2회 (16개사)	금호석유, 넥센, 대신증권, 동일산업, 베뉴지, 에스엠, 에이디엠코리아, 쎄백스링크, 조광피혁, 티엘아이, 피씨디렉트, 한국경제TV, 한진칼, 휴센텍, KB금융, KISCO홀딩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KCGS

- 최근 3년 주주제안자별 현황을 보면 기관투자자가 상정한 주주제안 안건 수는 2022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올해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소액주주연대와 개인주주의 주주제안은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개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소위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및 주주환원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이 확대됨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짐
- 최대주주(혹은 2대주주)가 제안하는 주주제안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전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다수 제기된 주주제안이 상정되지 않은 영향으로 파악됨
  - 다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업계 내 1위 증권업체가 적극적인 지분매입 후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경영권 분쟁 목적의 주주제안 사례 또한 발견됨

〈표 3〉 주주제안자별 주주제안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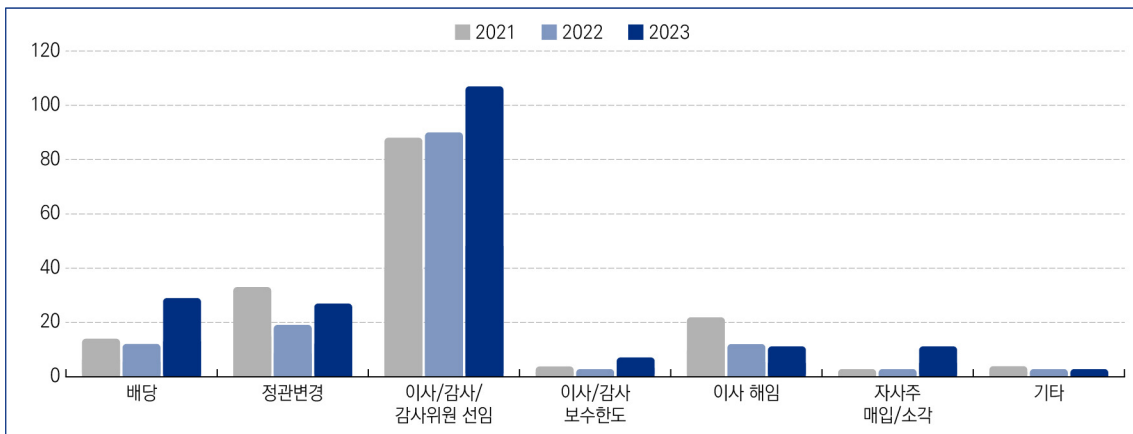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기관투자자	5	9	9	23
소액주주연대	10	11	18	39
개인주주	6	5	14	25
최대주주/주요주주	10	7	8	25
노조	0	1	1	2
확인불가	3	4	3	1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KCGS

- \* 동일 기업에 2개 이상의 주주제안자가 안건을 상정한 경우 각각 합산함
- \* 해당 연도에 한 기업에 중복하여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한 경우 개별로 합산함

- 안건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사/감사/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근 3년 모두 주주제안 안건 중 가장 큰 비중(3년 평균 57%)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정관 변경의 경우, 2021년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설치 등 전반적인 이사회 구성 및 경영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주제안이 다수 상정되었으며, 그 밖에 집중투표제 채택, 대표이사-의장 분리 등 지배구조 체질 개선 요청이 주류를 이룸 - 다만, 2023년 주주총회의 경우 ‘황금낙하산’ 규정 삭제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뿐만 아니라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제안(6개사)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을 보임
  - 배당, 이사/감사 보수 한도 제안은 소수이긴 하나 2023년에 주주총회에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사주 매입/소각 안건의 경우에도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함
    - 이를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환원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주주환원의 방식도 현금배당 확대 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그림 1〉 안건별 주주제안 추이(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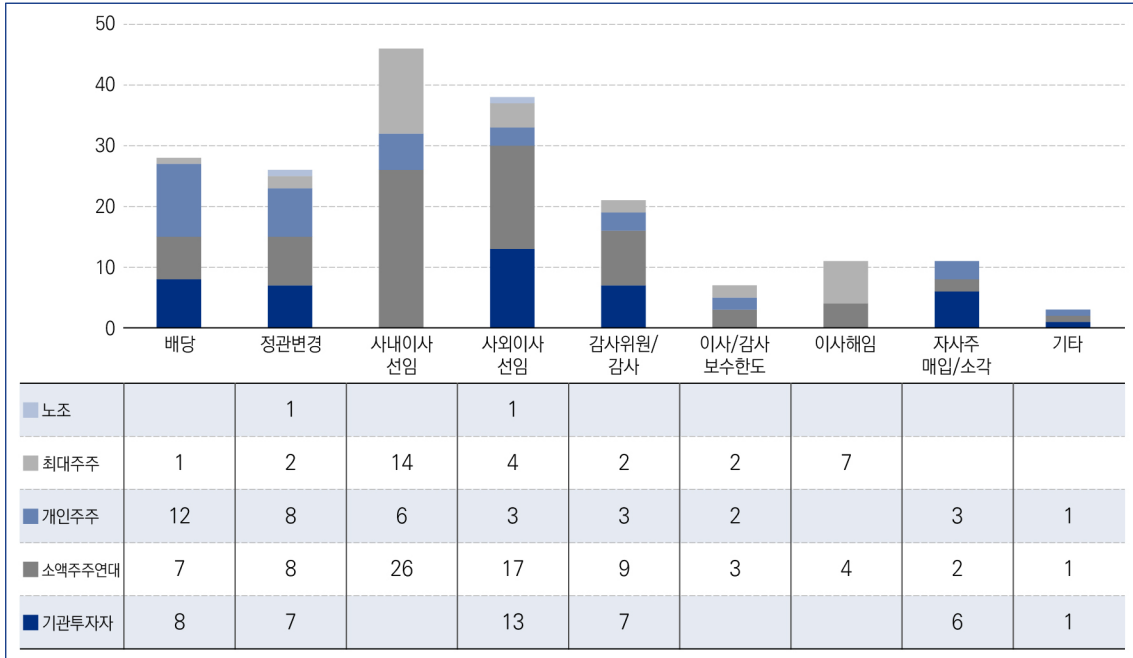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KCGS

- 주주제안 안건별 주주제안자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2023년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남
  - 현금배당 확대의 경우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횟수가 유사한 비중을 보였으며, 개인주주의 주주제안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관 변경의 경우 액면분할과 이에 수반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초다수결의제 삭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등 기존 정관 내 경영권 방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일반주주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정관 변경안이 상정됨
  - 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소액주주연대와 최대주주(혹은 2대주주)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대다수 제안하였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소액주주연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소액주주연대 또는 최대주주(혹은 2대주주)는 전반적인 이사회 교체를 통해 현 이사회에 기업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거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다수 상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사 해임 안건의 경우 상당수가 회사와 경영권 분쟁 중인 최대주주(혹은 2대주주)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면,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발의된 이사해임 안건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이사회 교체를 시도하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사 해임 제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개최된 2017년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자사주 매입/소각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제안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가 연대하여 자사주 매입을 제안하는 사례 또한 발견되었으나 모두 부결됨
  - 기타의 경우 전자투표제 도입, M&A를 통한 신사업 확대, 사외이사 증원 등의 안건이 제안됨

2) 최근 10년간 주주제안 현황: 기업과 주주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유고은, KCGS Report 제12권 2호.

〈그림 2〉 2023년 주주총회 안건별 주주제안자 비중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KCGS

\* 동일 기업에 2개 이상의 주주제안자가 개별 안건을 상정한 경우 개별로 합산함

\* 동일 기업에 2개 이상의 주주제안자가 연대하여 단일 안건을 상정한 경우에도 개별로 합산함

### 2021년 - 2023년 주주제안 가결률 분석

- 최근 3년 안건별 주주제안 가결률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먼저, 배당의 경우 2021년 주주제안 12건 중 1건이 가결되었으나, 이는 이사회 안(1주당 250원), 주주제안 안(1주당 1,000원) 중 1주당 500원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가결된 사례로 순수 주주제안 배당안이 가결된 사례는 최근 3년간 발견되지 않음
  - 정관 변경의 경우 2023년 높은 가결률을 보이지만 가결된 주주제안 7건 중 4건은 이사회 및 주주 공동제안(에스엠) 사례로 확인되며, 정관 내 부칙 수정 안건 등을 제외했을 때 분기배당 신설만이 유일한 주주제안 가결 사례로 파악됨
    - 이 외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개정,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안은 모두 부결됨
  - 이사 선임 주주제안의 가결률은 최근 3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주주총회에서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가결률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특히 감사선임의 경우 전체 주주제안 15건 중 6건이 가결되어 가결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주주제안 5건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남

- 이사 해임 안건의 경우 3년 동안 가결률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23년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총 11건(3개사)의 이사 해임 주주제안 안건 중 5건(2개사)의 가결사례는 모두 최대주주의 경영권 분쟁 성격의 주주제안으로 나타남
- 자사주 매입/소각의 경우 최근 3년간 모두 부결되었으며, 기타(자발적 상장폐지, 무상감자, 전자투표제 도입, 의안순서 변경, M&A 요구) 안건 또한 가결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표 4〉 안건별 주주제안 가결률(2021-2023)

	2021년	2022년	2023년
배당	8.3%	0.0%	0.0%
정관 변경	15.6%	0.0%	25.9%
사내/기타비상무이사 선임	6.1%	7.3%	27.9%
사외이사 선임	0.0%	9.4%	17.1%
감사/감사위원 선임	5.6%	5.9%	31.6%
이사/감사 보수한도	0.0%	0.0%	14.3%
이사 해임	0.0%	8.3%	45.5%
자사주 매입/소각	0.0%	0.0%	0.0%
기타	0.0%	0.0%	0.0%
전체 가결률	5.5%	5.6%	20.2%

\* 가결률: 가결 안건 수/(전체 주주제안 안건 수 - 후보 사퇴, 보고사항 전환 등으로 철회된 안건)

- 다음으로 최근 3년 주주제안자별 가결률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21년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주주제안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관안이 모두 가결됨으로써 기관투자자 가결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관투자자의 경우 2021년 사조오양(차파트너스), 2022년 에스엠(얼라인파트너스)에 각각 독립적인 감사위원, 감사를 선임함으로써 주주행동주의의 성공사례로 손꼽힘
    - 다만, 2023년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 가결률 감소는 적극적인 의결권 위임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주제안 안건 내용상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최대주주/주요주주의 경우 2021년에는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총수 일가 내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제안이 모두 부결됨으로써 가결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2022년 이후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경영권 분쟁 성격의 이사선임 주주제안이 다수 상정, 가결됨으로써 가결률이 높게 나타남
  - 소액주주연대의 경우 2023년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경영실패 등을 사유로 기존 이사회 내 이사 해임, 이사 선임 안건 다수를 제안하였으며, 가결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명성티엔에스, 파나진, 아이에스이커머스, 이커머스, 유니켄)

- 다만, 상대적으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광주신세계, 사조산업, 대호에이엘, 전방, KISCO홀딩스, DB하이텍, 대웅)은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주주제안이 상정된 일부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공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소통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3년의 개인주주의 높은 주주제안 가결률(13.8%)은 에스엠 정관 변경안 중 개인주주(이수만)의 주주제안이 이사회 공동제안으로 가결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며, 해당 사례 외에 개인주주의 주주제안 21건은 모두 부결됨
- 결론적으로 주주제안자별 평균 가결률을 비교한 결과, 최대주주(혹은 2대주주)의 경영권 분쟁 성격의 주주제안 가결률(2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관투자자(12.6%), 소액주주연대(6.2%) 순으로 나타남
- 개인주주가 상정한 주주제안의 경우 2021년 1건 가결사례(넥센, '정관 내 주식매수선택권 도입') 및 2023년 이사회-개인주주 공동제안 사례를 제외했을 때 실제 유의미한 가결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특히 공시 측면에서 주주제안자가 개인인 경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나 기타 제안 취지 등을 공시하지 않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제안 안건 상정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을 비교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개인주주가 제안한 안건들의 낮은 가결률로 이어지게 됨
  - 반면, 개인에 비해 주주제안을 위한 자원투입의 여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공개 캠페인 진행 및 공개 주주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을 통해 주주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일반투자자 및 기타 기관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임

〈표 5〉 주주제안자별 주주제안 가결률(2021-2023)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투자자	21.1%	9.1%	7.5%
소액주주연대	1.5%	0.0%	17.1%
개인주주	3.3%	0.0%	13.8%
최대주주/주요주주	6.7%	17.6%	50.0%
노조	0.0%	0.0%	0.0%
전체 가결률	5.5%	5.6%	20.2%

\* 주주제안자가 확인 불가한 경우도 전체 가결률 계산 시에 합산하였음

- 다음으로 내부지분율<sup>3)</sup>별 주주제안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지분율의 차이가 주주제안 대상이 되는 기업 개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2023년의 경우 내부지분율이 낮은(20% 미만) 기업에 상정된 주주제안 중 37%가 가결된 반면, 내부지분율이 높은(40% 이상) 기업에 상정된 주주제안 중 18%가 가결되는 차이를 보임
- 다만, 2023년의 경우, 내부지분율이 높은(40%) 기업에서 가결된 주주제안 4건 중 2건(남양유업, 아이에스이커머스)은 감사 선임 주주제안이라는 점에서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이 상정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제안 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들이 발견됨
- 2021년, 2022년에도 3%를 활용하여 각각 1개사(한국엔컴퍼니), 2개사(에스엠, 사조오양)에서 감사/감사위원 주주제안 가결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20년 개정된 3%를 관련 상별 규정이 주주제안의 가/부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표 6〉 내부지분율별 주주제안 상정 및 가결 현황(2021-2023)

내부 지분율	지분율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주주제안 기업 수 (비중)*	가결 기업 수 (비중)**	주주제안 기업 수 (비중)	가결 기업 수 (비중)	주주제안 기업 수 (비중)	가결 기업 수 (비중)
~20% 미만	13.1%	10개사 (29%)	1개사 (10%)	10개사 (29%)	3개사 (30%)	19개사 (40%)	7개사 (37%)
20% 이상~40% 미만	30.4%	12개사 (35%)	1개사 (8%)	15개사 (44%)	1개사 (7%)	7개사 (15%)	1개사 (14%)
40% 이상~	53.2%	12개사 (35%)	3개사 (25%)	9개사 (26%)	2개사 (22%)	22개사 (46%)	4개사 (18%)

\* 주주제안이 상정된 전체 기업 중 해당 내부지분율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

\*\* 해당 내부지분율 내에서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 중 주주제안이 가결된 기업의 비중

###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3년 국내 상장사에 제기된 주주제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 대상기업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조사 시점이 사실상 상반기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주주제안 안건 수가 전년 대비 37% 가량 증가하였음
- 특히, 주주제안자별 현황을 보면 소액주주연대와 개인주주의 주주제안이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자본시장 내 주주행동주의의 주체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안건별 추이를 살펴보면, 배당 확대, 이사 선임 등의 기존 주주제안의 주류를 차지하던 안건뿐만 아니라 보수한도 주주제안을 통해 임원보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특히 2023년 주주총

3) 내부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포함)의 지분율 합

회에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주주제안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주주제안 안건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 다만, 이러한 주주제안자 및 주주제안 안건의 외연 확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주회원 강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제안들의 부결률은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 현금배당 관련 주주제안은 2021년 이사회-주주제안 합의안이 가결된 1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결되었으며, 자사주 매입/소각 주주제안 또한 가결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적절한 주주회원 수준에 대한 기업-주주 간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주제안자별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주주가 상정한 주주제안(이사회 공동제안 안건 제외)은 최근 3년간 가결사례가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되며,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주제안의 경우에도 유가증권 상장 기업의 경우 가결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개인주주 혹은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주주제안의 경우 의결권위임행사 또는 주주제안 취지 등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 입장에서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 간 차별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견됨
  - 또한 코스닥 기업들을 중심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되거나 이후 추가적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게 되는 사례도 나타남
- 올해에도 기관투자자(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우 작년 감사선임 등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주제안 흐름이 이어졌지만, 활발한 의결권 위임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가결률이 최근 3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일반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러한 주주제안에 대응하여 대상 기업 또한 IR미팅,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주주제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주제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경영진이 주주의 의견을 인식하고, 기업지배구조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주주제안의 성패를 단순 가결율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관여활동의 한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함
  -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에 앞서 회사가 중장기적인 주주회원정책을 발표하거나 대표이사 해임 주주제안이 제기된 기업에서 주주총회 전 대표가 자진사임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됨
  - 주주제안을 통해 해당 기업의 특정 이슈에 대해 시장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일반 주주들이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기업은 부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주주회원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취할 확률이 높아짐

- 기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주주제안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또는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이전보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비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주주제안 공시 측면에서 주주제안자 또는 주주제안의 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주제안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최근 금융당국은 기업이 주주제안 및 주주서한을 확인한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시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sup>4)</sup>
    - 주주제안의 경우 제안자, 제안 내용, 주주제안서 원문을, 주주서한의 경우 서한의 주요 내용, 예상 답변 시기, 답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제안 내실화 및 주주-기업 간 활발한 소통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주총회 결과의 공시에 있어서도 국내의 경우 안건별 가/부결 여부만을 공시하며 찬/반 비율이 의무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에 미참여한 일반주주 또는 해당 기업의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확인하기 어려움
  - 각 안건의 찬/반 비율 공개는 주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호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의 의견 및 시장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주주행동주의 이행 전략을 수정하거나 시장 전반 및 기업 상황을 고려한 건설적인 주주제안을 가능케 할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함
    -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각각 공시규정, 지배구조모범규준, 주식회사법을 통해 주주총회의 각 안건별 투표 결과(찬성/반대/기권 비율)를 행사 주식 수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함
- 결론적으로 최근 급성장한 주주행동주의 흐름이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시 측면의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4) 주주제안·서한 접수부터 공시 의무화 추진...행동주의 펀드 활동 폭 넓어진다, 조선비즈, 2023.05.22.

# ESG 이슈 리포트 - 건설업(2)\*

### ESG평가실\*\*

- ▶ SASB, GRI, TCFD 등 ESG 관련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과 MSCI, KCGS 등 국내외 평가기관의 평가 지표, 국내 주요 건설사의 중대성 평가 내용을 종합한 결과 1) 기후변화 대응, 2) 건축물 환경영향 관리, 3) 산업안전보건, 4) 제품 품질 및 안전이 주요 이슈로 나타남
-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건설 단계 보다는 건설 자재 생산과 건축물 운영 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생애주기 관점의 관리가 필요함
-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성 평가, 안전 관련 역량 개발, 공급망 차원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제품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규제 리스크, 소비자와의 분쟁 리스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품 하자 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시 및 하자 예방 활동,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 Issue 3. 산업안전보건

#### □ 산업 내 동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설업은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수와 재해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 본고는 파트 1과 2로 나누어 발간되었으며, 파트 1은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환경영향 관리에 대한 분석을 다루었으며 파트 1 내용은 KCGS 리포트 13권 5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정승연 선임연구원(파트장), syjeong@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박수빈 연구원, moana@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정선아 연구원, sac@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원소정 연구원, sojung@cgs.or.kr

〈표 1〉 최근 3개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및 재해자 수 현황(2020~2022)<sup>1)</sup>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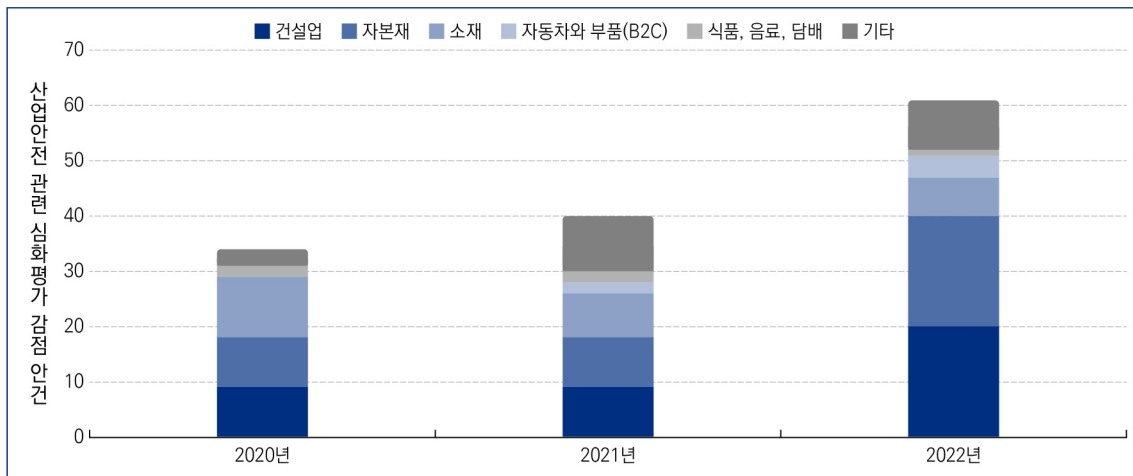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 사망자 수*	사고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사고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사고 재해자 수
총계	882	92,383	828	102,278	874	107,214
건설업	458	24,617	417	26,888	402	27,432
제조업	201	23,127	184	24,265	184	23,764
서비스업	122	36,008	123	11,292	150	13,929
기타	101	8631	104	39,833	138	42,089

\* 사고 사망자 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

\*\* 사고 재해자 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 한국ESG기준원에서 실시한 ESG평가의 최근 3개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자본재 산업과 더불어 3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으로 심화평가 감점 안전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 나타남 (〈그림 1〉 참조)

〈그림 1〉 최근 3개년 ESG 평가 산업안전 관련 심화평가 감점 안전 현황(2020~2022)<sup>2)</sup>



- 앞서 최근 3년간 심화평가 감점 안전이 가장 많았던 산업 5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5개 업종의 2022년 ESG 평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표 2〉 참조)
  -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타 산업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근로자 참여,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 영역에서는 노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남

1)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취합하여 재분류함

2) 한국ESG기준원에서 실시한 2020~2022년 ESG평가 심화평가 결과를 재분류함

〈표 2〉 2022 ESG 평가결과 활용 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sup>3)</sup>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sup>4)</sup>	주요내용	건설업	자본재	소재	자동차와 부품	식품, 음료, 담배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 주도 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자원 배치	High	Mid	Mid	High	Mid
근로자 참여	현장 작업자 대상 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 참여 유도	Mid	Low	Low	High	Low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작업장 위험요인의 식별, 통제방안 및 대응절차 마련	High	Mid	Mid	High	High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 및 정기적 관리	Mid	Mid	Low	High	Low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목표를 설정, 정기 평가 및 개선	Mid	Mid	Low	High	Mid

High : 비교적 우수한 수준

Mid : 양호한 수준이나 체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Low : 취약한 수준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건설업 관련 대표적인 규제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여 건설공사 시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함
  -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전보건 확보 및 조치 의무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의 설정, 사업장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관련 업무절차 등이 해당함<sup>5)</sup>
  - 현재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처벌 중심에서 기업의 자기규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sup>6)</sup>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300인 이상 대기업 대상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3)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가이드북(2021)’에서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를 2022년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 중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평가문항의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함

4)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가이드북(2021)’에서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7개(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중 위험요인파악, 제거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을 1개로 통합하여 재분류함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6) 고용노동부, 202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또한, 중대재해가 빈번한 건설·제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 및 장비를 중점 지원할 예정에 있어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공장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 리스크 및 기회

○ 리스크 1.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규제 및 재무 리스크

- 산업안전 및 보건 이슈와 관련하여 건설업에 가장 큰 리스크는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단기적 측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도 재무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단기적 측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관리자는 관련 법에 의해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하도급이 일반적인 건설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역시 건설사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고 229건 중 총 34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중 41.2%가 건설업임(〈표 3〉 참조)

〈표 3〉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현황(2022.1.1.~2022.12.31.)<sup>7)</sup>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송치			
	총계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229건	34건	16건(47.1%)	14건(41.2%)	4건(11.8%)

- 실제로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결사례로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대상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음<sup>8)</sup>
- 이처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의 평판 저하, 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또 다른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3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 40.5일이 소요됨.<sup>9)</sup> 작업중지 기간 동안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공기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 비용의 투입도 발생할 수 있음

7) 고용노동부, 2023.01.25., “2022년 중대재해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p.19

8) 한겨레 신문, 2023.04.06.,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법 위반 CEO에 첫 유죄 선고”

9)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2.07.27., “작업중지 해제 평균 40.5일 소요…사업주 신청 시 법령 따라 결정”,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9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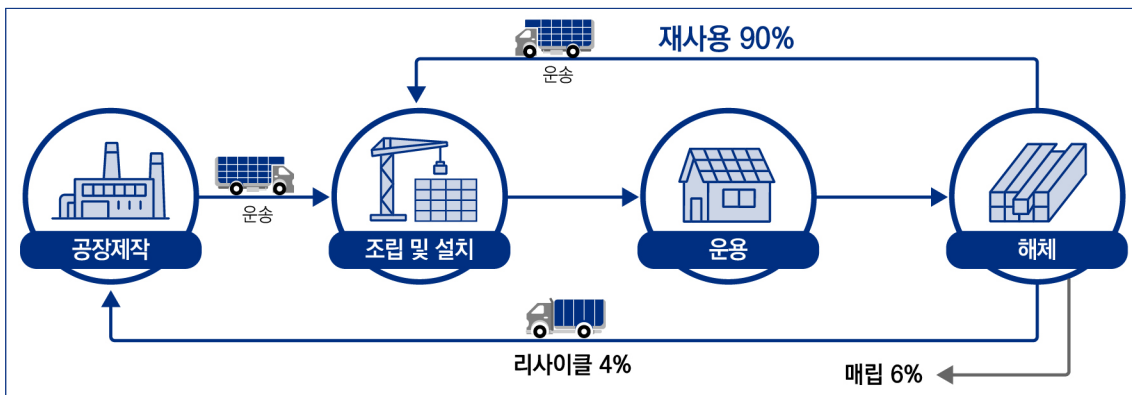
○ 리스크 2. 안전전문인력 수급 및 인력 유출 등 비재무적 리스크

- 건설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규제 강화로 안전관리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인력의 유출, 신규 안전관리자 수급문제 등 비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6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2023년 7월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선임 사업장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 분야 전문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업은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경쟁사, 혹은 다른 산업으로의 인력 유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회. 안전위험을 고려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업은 안전 이슈를 고려한 건축물 설계 방식 도입,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사례로는 모듈러 건축<sup>10)</sup>이 있음. 모듈러 건축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 작업을 공장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최소화되므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모듈러 건축은 기존 건설방식에 비해 평균 50~60%의 공사기간이 단축<sup>11)</sup>되어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포스코건설은 '탈 현장화'를 미래 건설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모듈러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2층 규모의 건물을 모듈러 건축공법으로 건립함(〈그림 3〉 참조)

〈그림 2〉 모듈러 주택 제작 프로세스<sup>12)</sup>



10) 공장에서 생산된 박스형태의 완성된 모듈유닛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  
 11) 김재영, 이종국, 2014, "모듈러 건축의 현황과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 사례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4), p.39  
 12) 국토교통부

〈그림 3〉 모듈러 주택 사례 - 포스코건설이 지은 광양제철소 광양생활관 건물



□ 관리 방안 및 사례

○ 건설현장 위험관리

- 건설업은 매번 공사현장이 다르고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 및 협력업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별로 발생가능한 위험 유형, 수준이 상이함. 따라서 현장별로 구체적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요인별 위험 완화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현장의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서는 '위험성 평가<sup>13)</sup>'가 있음. 위험성평가는 아래 <표 4>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평가표를 활용하여 주요 위험을 도출하고 위험의 빈도, 강도 등을 추정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위험성에 따라 완화조치의 우선순위를 수립,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관련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음

〈표 4〉 KRAS시스템 위험성평가표<sup>14)</sup> 작성 예시

작업공정명 :			위험성평가						평가일시 :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 보건 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x 강도)					
원료 입고	전기적 요인	정전기로 인한 폭발	안전보건 규칙 제325조	-	3	2	6 (높음)	정전기의 발생 억제/ 제거 조치	2 (낮음)	'22-05 -30	'22-05 -30	

13)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 빈도, 중대성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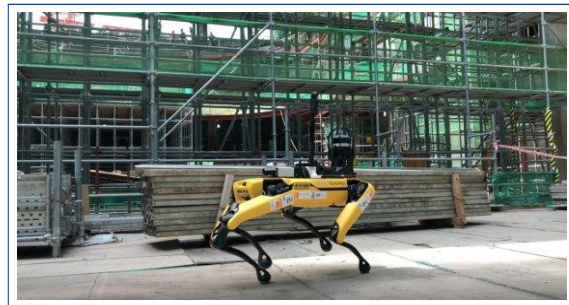
14) KRAS(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2020, "2020년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https://kras.kosha.or.kr/board/index/5>

- 위험성 평가가 정기적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조치였다면 최근에는 현장 관리자가 갈 수 없는 사각지대, 상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의 가설구조물, 지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하고 있음<sup>15)</sup>
- 최근 GS건설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360도 카메라,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설치한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현장에 도입함<sup>16)</sup>

〈그림 4〉 현대건설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5〉 건설현장 안전관리 로봇 스팟(SPOT)



○ 안전 분야 직원 참여 강화 및 역량 개발

- 앞서 최근 3개년 ESG 평가결과를 활용한 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에서 언급하였듯,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참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안전보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 사업장 근무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위험성 평가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안전관리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참여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안전제안과 같은 활동이 있음 (〈표 5〉 참조)

〈표 5〉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참여방법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안전제안 활동
참여	사업 대표자, 근로자 대표,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관리감독자, 현장 근로자	임직원, 파트너사, 현장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활동내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는 회의	근로자에게 정기적(또는 상시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15) 현대건설, 2022,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hdec.kr/kr/company/library\\_03.aspx](https://www.hdec.kr/kr/company/library_03.aspx)  
 16) 매일경제, 2021.06.08., "GS건설, 로봇개 '스팟'이 유해가스 감지 임무 맡는다"

- 현대건설은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으로 협력사와 매일 안전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H-안전지갑' 플랫폼을 개발함. 현장 근로자는 'H-안전지갑' 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안전제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안전제안 또는 신고 시 추후 사용가능한 네이버 포인트가 적립됨<sup>17)</sup>
- 앞서 건설업의 비재무적 리스크에서 언급하였듯 2024년부터 5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안전관리자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건설업에서는 기존 안전관리자의 전문역량을 지속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 안전관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GS건설은 안전보건 분야 역량 개발을 위해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하고 각 직무별(시공직군/관리직군), 경력에 따른 생애주기별(입문/역량/심화/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sup>18)</sup>

〈그림 6〉 안전 분야 직원 역량 개발 사례 - GS건설 안전혁신학교 커리큘럼

구분	안전보건 관리자		시공	BM	상생협력
Lv.4 (15년~)	안전보건 직무교육(보수)	안전보건 심화 (리더십)	시공직군 전문화 (CM)	BM심화 (신규개설)	협력회사 소장 (직책자)
Lv.3 (9~14년)			시공직군 심화		
Lv.2 (5~8년)		안전보건 역량 (강사과정)	시공직군 역량	BM역량	협력회사 안전관리자
Lv.1 (~4년)	안전보건 직무교육(신규/보수)	일반직 안전보건 입문 (신입/경력)	시공직군 입문 (신입/경력)	BM입문	

○ 공급망 안전관리

- 건설업은 복합생산, 분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공중 단계별 참여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제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방안으로 협력업체 대상 산업안전 및 보건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협력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나아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17) 현대건설, 2022,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hdec.kr/kr/company/library\\_03.aspx](https://www.hdec.kr/kr/company/library_03.aspx)

18) GS건설, 2022, "2022 GS건설 통합보고서", <https://www.gs.co.kr/ko/sustainability/reports+>

- 현대건설은 협력사 선정 및 정기 평가 시 안전 및 보건 평가 비중을 전체 평가 비중에서 30%까지 상향하여 평가하는 한편, 우수 협력업체 대상 연간 5,000억 규모의 인센티브 물량을 배정하고 있음<sup>19)</sup>
- 협력업체 대상 정기적 평가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업체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안전관리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안전관리비를 100% 선지급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을뿐더러 협력사 대상 안전컨설팅, 안전인정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음<sup>20)</sup>

#### Issue 4. 제품 품질 및 안전

##### □ 산업 내 동향

-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란, 건축 과정에서 품질 관련 법령, 시공 및 사용자재 기준, 설계서 등과 불일치하는 부적합한 공사(부실공사)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활동 일체를 의미함<sup>21)</sup>
  - 해당 과정에서 목적물의 품질 또는 성능상의 결함을 하자로 정의하며, 하자의 범위는 목적물 완공까지의 과정인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모두 포괄함
-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부실시공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건설업 품질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건설사의 경미한 부실공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2022년도 부실벌점제도 결과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10곳 중 7곳에서 부실이 적발되었으며, 실제 많은 기업들이 부실벌점제도 페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표 6> 참고)
  - 앞서 언급된 붕괴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건설업에서 부적합공사(부실공사)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건물의 실사용자인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부실공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19) 현대건설, 2022,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hdec.kr/kr/company/library\\_03.aspx](https://www.hdec.kr/kr/company/library_03.aspx)

20) 삼성물산,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www.samsungcnt.com/esg/resource/report/sustainability.do>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표 6〉 시공능력평가 10위 건설사 내 부실벌점 부과 현황(2022)

업체명	벌점부과횟수(건)	현장벌점 합
삼성물산주식회사	1	2.00
현대건설	2	3.56
디엘이앤씨	-	-
포스코건설	1	1.00
지에스건설	1	0.60
대우건설	-	-
현대엔지니어링	-	-
롯데건설	2	2.62
SK에코플랜트	2	2.77
HDC현대산업개발	1	2.00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벌점현황 재편집

- 건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매년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자 관련 소비자 분쟁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건설 품질 이슈는 안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분쟁을 접수한 입주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분쟁 건수는 2015년 4,000건을 초과하였고,
  - 최근에도 매년 3,000~4,000건 가량의 하자 분쟁이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음<sup>22)</sup>
- 건설업 품질 관련 규제로는 대표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의거한 부실벌점제도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부실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부실공사 방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sup>23)</sup>
  - 부실벌점제도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공시하는 제도로, 관련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시공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22) 조선비즈, 2023.04.09. "GS건설, 3년간 '하자분쟁 신청' 최다... "10대건설사 총 2,055건"

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상이하게 적용되는 관련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를 비롯한 19개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건설업 품질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3대원칙(△시공품질 관리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강화, △무관용 원칙대응)에 대한 19개 세부 과제를 발표함

□ 리스크

○ 리스크 1. 규제 리스크

- 부실공사 차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과 형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음<sup>24)</sup>
- 그 중 부실벌점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게될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됨
-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계약의 전망에 영향을 끼쳐 회사의 명성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허가를 손상시키며, 신사업 진출에 제한이 되는 등의 사업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됨
-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평균벌점’방식에서 ‘합산벌점’방식으로서의 부실벌점제도 강화가 예고되어 있어 벌점 부과로 인한 각종 불이익 처분 가능성이 증가함

〈표 7〉 부실시공벌점 제도 불이익 규정\*

법령	규제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합산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

출처 :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리스크 2. 하자보수분쟁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

- 기업의 공사품질 저하는 소비자의 하자보수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진행 비용과 재판결과에 따른 과태료 등은 기업의 잠재적인 재무적 리스크로 식별될 수 있음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류되어 있는 하자보수 관련 소송 건수는 총 91건으로, 건설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기업 분쟁은 재무적 손실을 야기하여 미래 현금 흐름 변화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는 투자자 및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기업이 자금 조달 시

24)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현황 및 시사점”

요구수익률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sup>25)</sup>

- 소송발생기업은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위험 프리미엄을 시장으로부터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증가할 경우 하자보수 충당부채도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지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은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개별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들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하자보수소송의 다수를 차지함

〈표 8〉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하자보수소송 진행 현황

업체명	시공평가액(억 원)	하자보수소송 건수 <sup>26)</sup>
삼성물산주식회사	219,472	2건
현대건설	126,041	15건
디엘이앤씨	99,588	3건
포스코이앤씨	96,123	10건
지에스건설	95,642	14건
대우건설	92,305	13건
현대엔지니어링	91,185	6건
롯데건설	72,954	8건
SK에코플랜트	53,560	3건
HDC현대산업개발	49,160	17건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2022년도 사업보고서

○ 리스크 3. 소비자 하자 관련 민원과 평판저하 등 비재무적 리스크

- 정상기 외(2016)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품질은 ‘고객,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명시적, 묵시적, 의무적으로 요구 또는 기대하는 특성을 얼마나 충족시키는가’로도 정의할 수 있음<sup>27)</sup>
- 이에,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하자보수 요청 대응 능력 또한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 하자보수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재산상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지속적인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속적인 민원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는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져 산업 내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sup>28)</sup> 지속적인 하자 업무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직·간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음

25) 박종일, 2014, “기업소송, 자본비용 및 기업특성”, 『한국회계학회』, 제39권 제4호, pp.251-304

26) 보고기간 말 해당 기업이 피고로 계류중이며, 소송가액이 20억원 이상인 사건 수

27) 정상기 외, 20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 결과를 통한 건설 품질관리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7권 제1호, pp.110-118

2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

- 그러나, 본 원에서 실시한 2022년도 ESG 평가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의견 및 불만사항 처리실적을 공개하는 기업은 전체 건설업 기업 중 약 21%에 불과하며, 하자 보수 관련 민원 관련 공시가 비교적 미비한 상황임

#### □ 관리 방안 및 사례

##### ○ 규제 리스크 관리 및 하자 관련 지표 공시

- 부실벌점제도 강화에 따라, 기업들은 벌점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부실벌점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해야 함
- 기업은 부실벌점 부과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해당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DL이앤씨는 최근 벌점 사례 분석을 통해 ‘벌점 Zero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협력사를 포함한 전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여 벌점 리스크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있음<sup>29)</sup>
- 삼성물산의 경우, 하자보수비용과 제품결함 및 안전관련 사고로 발생한 재무적인 손실(벌금, 손해배상등)을 공시해 기업의 하자 관련 리스크 정보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함<sup>30)</sup>
-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 SASB)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는 건설업에 하자 및 안전 관련 재작업 비용과 하자 및 안전 관련 사고와 관련된 벌금 및 합의금 규모의 공시를 권고하고 있음

##### ○ 하자 관리 업무프로세스 마련

- 시공단계에서 반복하여 발생하는 동일 하자 현황을 신규프로젝트 수행 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짐<sup>31)</sup>
- 따라서, 현장과 하자 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연계성이 필요하며, 시공 입주 후 단계의 통합적인 품질·하자관리가 필요함
- DL이앤씨는 2021년부터 ‘하자깨기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하자‘Data Base’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설계, 구매, 시공 등 단계별로 대표적인 하자 증상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하자 재발을 방지하는 하자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sup>32)</sup>

##### ○ 소비자 하자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성화

- 하자 신청 후 입주자, 현장관리자 및 협력업체 작업자 간 의사소통이 미흡하여, 민원인과 조직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으며 민원정보 및 품질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이 부족한 상황임<sup>33)</sup>

29) DL이앤씨, 2022, “2022 DL이앤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dlenc.co.kr/sustainability/manage/Report01.do>

30) 삼성물산, 2022, “2022 삼성물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www.samsungcnt.com/esg/resource/report/sustainability.do>

31) 오정환 외, 2009, “공동주택 하자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pp.16-27

32) DL이앤씨, 2022, “2022 DL이앤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dlenc.co.kr/sustainability/manage/Report01.do>

33) 오정환 외, 2009, “공동주택 하자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pp.16-27

- 이와 같은 하자처리의 업무 중복 및 책임회피로 인해 하자 관련 보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하자서비스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sup>34)</sup>
- 하자보수 관련 민원 발생시 민원관리 및 분쟁해결시스템이 미비하고 즉각적 하자 보상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하자피해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DL이앤씨는 하자보수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하자보수 관리 및 고객응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음<sup>35)</sup>
- 현대건설은 ‘H두드림’을 운영하여 외부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고객품질만족도 조사 수치를 주기적으로 추적 및 관리하고 있음<sup>36)</sup>
- GS건설은 고객의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고객 민원(CRM)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Xi 내집방문 App’을 통해 하자처리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입주 후 AS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바일 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하자 보수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sup>37)</sup>

## 마치며

- ESG 관련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 및 국내외 평가지표 등을 종합한 결과 건설업의 주요한 ESG 이슈는 1) 기후변화 대응, 2) 건축물 환경영향 관리, 3) 산업안전보건, 4) 제품품질 및 안전으로 나타남
- 주요 ESG 이슈별 리스크 및 기회, 관리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공시 강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가 리스크로 파악됨.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 자재생산과 건물 운영 단계에서 대부분의 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 전 밸류체인 (Scope3포함)을 고려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탄소저감형 건설공법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물 환경영향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설 자재생산, 운영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만큼 공급망 전반의 환경영향을 관리하고, 제품 생애주기 관리 측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 밖에 녹색 건축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친환경 건축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생애주기 관점의 저탄소 건물 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역량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4) 오정환 외, 위의 논문

35) DL이앤씨, 2022, “2022 DL이앤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dlenc.co.kr/sustainability/manage/Report01.do>

36) 현대건설, 2022, “2022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hdec.kr/kr/company/library\\_03.aspx](https://www.hdec.kr/kr/company/library_03.aspx)

37) GS건설, 2022, “2022 GS건설 통합보고서” <https://www.gs.co.kr/ko/sustainability/reports+>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리스크로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벌금, 작업중지 등 규제 및 재무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건설업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현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통해 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관리 활동을 통해 건설업은 안전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제품 품질 및 안전 측면에서 건설업은 부실공사 시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 등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규제 리스크가 큰 산업임. 또한, 품질저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하자보수소송은 재무적 손실과 기업 평판 저하 리스크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건설업은 사업장의 부실벌점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주요 하자, 불편사항에 대응하고 있음
- 이처럼 건설업은 건축물 시공 외에도 자재생산과 조달, 건축물 운영 전 단계에 걸쳐 환경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자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 정부, 소비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인 만큼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특성, 현장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요 ESG 이슈를 선별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 Global News

### 1. EU 의회, 기업 거버넌스에 인권 및 환경 영향 통합 법안 승인

김예린\*

- 지난 6월 1일, EU 의회는 EU 회원국 대상으로 기업 거버넌스에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통합하는 법안을 승인함<sup>1)</sup>
  - 참석한 의원 총 629명 중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
- 해당 법안은 기업이 부정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 내용 1) 기업은 아동 노동, 노동 착취, 환경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등과 같은 인권 및 환경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활동을 중지해야 함
  - (주요 내용 2) 기업은 공급업체를 비롯하여 판매, 유통, 운송, 폐기물 관리 등 가치 사슬 전 영역에 포함되는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함
  - (주요 내용 3) 기업은 지구 기온의 1.5°C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함
  - (주요 내용 4) 수립한 저탄소 전환 계획의 이행 성과에 따라 상여금 등 이사의 변동 보수가 책정되어야 함
- 해당 법안은 산업 분류와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EU 기반 기업 및 EU 외 기업에 적용될 예정임
  - EU 기반 기업의 경우, ① 2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4,000만 유로 이상의 전 세계 매출액을 가졌거나 ② 모회사가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1억 5,000만 유로 이상의 전 세계 매출액을 가진 기업에 적용될 예정임
  - EU 외 기업의 경우, EU 내에서 4,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기업 중 전 세계 매출액이 1억 5,000만 이상인 기업에 적용될 예정임
-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국가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법안 미준수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제외하거나 매출액의 최소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음

---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ESG 데이터팀 연구원, yrkim@cgs.or.kr

1) European Parliament, MEPs push companies to mitigate their nega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2023.06.01.,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524IPR91907/meps-push-companies-to-mitigate-their-negative-social-and-environmental-impact>

- EU 외 기업의 경우, EU 내 공공조달이 금지될 수 있음
- EU 의회에서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최종 법안 내용의 완성을 위해 EU 회원국과의 협상이 시작될 예정임
- EU 의회는 최종 법안의 완성 및 시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EU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

---

## Global News

### 2. CDP, 1,600여 개 기업에 환경 데이터 공개 촉구

구현지\*

- 2023년 5월 31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공개 프로젝트)는 300개에 달하는 금융기관과 함께, 1,600여 개 기업에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sup>1)</sup>
- 매년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NDC(Non-Disclosure Campaign)는 올해 288개 글로벌 기관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1,607개 기업에 CDP를 통해 그들의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 영국, 유럽연합, 브라질, 일본, 미국 등 국가와 대부분의 다른 주요 경제국에서 곧 실시되는 의무 공시 규제는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2022년 CDP가 실시했던 동 캠페인<sup>2)</sup>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이 직접 관여할 경우, 기업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약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CDP는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영향력과 시장에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CDP의 환경 데이터 공개 요구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의 반응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7년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금융기관의 참여는 4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보였음
  - 올해 캠페인에는 Schroders, Cathay FHC, Aviva Investors, Manulife, Sumitomo Life Insurance, AQR,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GIM) and PGGM 등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며, 이들 기관의 총 자산은 약 29조 달러 규모에 달함
- 또한, 캠페인의 대상 기업으로는 Saudi Aramco, Exxon Mobil Corporation, Chevron, Tesla Inc, Volvo Group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기업들이 포함됨
  - 51개국에 걸쳐 있는 1,607개의 캠페인 대상 기업들은 연간 약 4200 M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의 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임
- 본 캠페인에서 대상 기업들은 기후변화, 산림, 물<sup>3)</sup>의 3가지 주제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받을 것임
  - 이전 캠페인의 기초대로, 대상 기업의 72%에게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의 공개가 요구될 것임
  - 아직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의 공개 요구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점차 물과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white07@cgs.or.kr

1) Over 1600 non-disclosing high-impact companies urged to share environmental data by nearly 300 leading financial institutions, CDP, 2023.05.31.

2) 2022년 캠페인에서는 388개의 환경적 영향이 높은 기업의 대응을 이끌어 냄

3) Climate change, Forest, and Water

산림에 대한 공개 및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

- 올해 캠페인에서는 대상 기업의 28%에 물 관련 영향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될 것이고, 26%에는 산림 관련 영향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될 것임
- Glencore, Swatch Group, DTE Energy 등의 기업들은 2022년에 기후변화, 산림, 물과 관련한 영향에 대해 공개하지 못했고, BP, Amazon, BMW 등의 기업들은 산림과 물 주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캠페인에서 이들 기업에는 3가지 주제에 대해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될 것임

○ 한편, 금융기관에게 물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은 우선순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석유/가스 추출 및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제약, 소매 기업도 이번 캠페인에서 물과 관련한 주제의 공개 대상 산업군임
- 의류 및 섬유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물을 대량 사용하고 오염을 발생시키므로 해당 주제에 대한 주요 공개 대상 산업군에 해당함
- 이에 따라,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Moncler, Skechers, Aldo 등의 기업은 물 관련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기업에 포함됨